

- 것임.
2. 주요 개정골자
    - 가.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“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을 신설(안 제3조 제2항제2호 가목)
    - 나.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중 불필요한 내용 삭제(안 제3조제2항제2호 다목~마목)
  3. 개정근거
    - 지방자치법(1995.12.29. 법률 제5069호)제15조
    -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(1996.12.1)제2조 및 제3조
  4. 조례(안) : 별첨
  5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첨부 : 1.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  
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
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  
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중 “다”목 내지 “마”목을 삭제하고, “가”목을 “나”목으로 “나”목을 “다”목으로 하며, “가”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기획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 
 부 칙  
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~②(생략) 1.~2.(생략)  가.~나.(생략) 다.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.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. 시민봉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~②(현행과 같음) 1.~2.(현행과 같음) 가.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. ~다.(현행 가.~나.와 같음) 다. (삭제) 라. (삭제) 마. (삭제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63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1997.01..  
 제 안 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  
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의 결정을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, 양도소득세 등 각종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,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됨에도 산정절차등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하고,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, 적법성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개별 토지가격합동 조사지침이 폐지(96.10.07)되고, 동 지침으로 규정하였던 내용중 필요한 사항들은 상위 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, 동 시행령, 동 시행규칙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, 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

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  - 가. 위원 “20인이내”를 “10인이상 15인이내”로 하고, 위원장“구청장”을 “부구청장”으로 함(안 제2조)
  - 나.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함(안 제4조의 2)
  - 다. 동지가심의회가 폐지됨
3. 개정근거법령
  -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(1996.6.29 대통령령 제15093호)제14조.
4. 조례(안) : 따로붙임
5. 예산조치여부 : 해당없음  
 따로붙임 : 1.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  
 2.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
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

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20인이내”를 “10인이상15인이내”로 하고, 동조 제2호중 “구청장”을 “부구청장”으로 하며, 동조제3항제1호중 “9인”을 “6인”으로, 동항 제2호중 “10인”을 “9인”으로 각각 한다.

제3조 본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위원 위촉)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,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7. 기타,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다고 판단되는 자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위원회의 심의) ①위원회는 토지가격산정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
1.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
2.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여부.
3. 조사담당공무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.

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가격을 심의할 경우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.

1.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차이.
2.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토지가격비표준에 의한 가격조정률과의 균형
3. 기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
제6조제2항중 “위원장이 결정한다”를 “부결된 것으로 본다”로 한다.

제8조중 “동지가심의회 위원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新·舊 條文對比表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2조(구성) ① ..... .....10인 이상 15인 이내..... .....
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	②.....부구청장 ..... .....
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 ..... .....
1. 관계 공무원중 9인 이내	1. ....6인.....
2. 제3조에서 정한자중 10인 이내	2. ....9인.....
제3조(위원위촉)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	제3조(위원위촉)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,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1.~6.(생략)	1.~6.(현행과 같음)
7. 기타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	7. 기타지역의 지가에 정통하다고 판단되는 자
신설	4조의2(위원회의 심의) ① 위원회는 토지가격산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	1.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.
	2.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표조정률의 적용 및 가격산정의 적정여부.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회의 및 의결)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때에는 <u>위원장이 결정한다.</u></p> <p>제8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, <u>동지가심의회 위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	<p>3. 조사담당공무원이 의견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경우 그 타당성 여부.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가격을 심의할 경우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. 1. 당해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차이. 2. 당해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률과의 균형. 3. 기타 그 지역의 지가형성요인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</p> <p>제6조(회의 및 의결) ② ..... ..... ..... .....부결된 것으로 본다.</p> <p>제8조(의견청취) ..... ..... (삭 제) ..... .....</p>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  
1997. 2. 22.  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  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 제출  
나. 회부일자 : 1997년 1월 21일  
다. 상정일자 : 제4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 ('97. 2. 22.)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 
□ 제안설명자 : 지적과장 윤종구  
가. 개정이유  
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의 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,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어 국민의 의무 또는 법률상이익에 직접으로 관계됨에도 산정절차 등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, 적법성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이 폐지('96. 10.7)되고, 동 지침으로 규정하던 내용중 필요한 사항들은 상위법령인 지가공시 및

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, 동 시행령,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개정골자  
○ 위원 "20인이내"를 "10인이상 15인이내"로하고, 위원장 "구청장"을 "부구청장"으로 함(안 제2조)  
○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함(안 제4조의 2)  
○ 동지가심의회가 폐지됨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  
○ 동 개정조례안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이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산정절차 등이 운영되고 있었으나, 동 지침이 '96.10.7 폐지되고, '96.6.29. 대통령령 제15093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규정중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, 신설하는 내용으로,  
○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었던 동지가

심의회가 운영상 실익이 없어 폐지되는 것으로 사료되며,

○안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위원의 정수를 6인 및 9인 이내로 규정한 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바, 위원 정수가 1명 초과되는 것으로 사료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- 5. 토론요지: 수정(안)가결할 것을 동의
- 6. 수정(안) 요지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'97.2.22. 김세창의원의 1인

나. 수정이유: 위원회의 위원 구성 내용중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코자 함.

다. 수정골자: 안 제2조제3항제1호중 "6인"을 "5인"수정

7. 심사결과: 수정(안)의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(안)에 대한 수정(안)

의안 번호	163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: '97. 2. 22.

제안자: 총무재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중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수정골자

○안 제2조제3항제1호중 "6인이내"를 "5인이내"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(안)에 대한 수정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(안)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항제1호중 "6인이내"를 "5인이내"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수정(안)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2조(구성) ① ..... ..... .....10인 이상 15인 이내 ..... .....	제2조(구성) ① ~ ②(개정안과 같음)
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	② .....부구청장..... .....	
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 ..... .....	③ ..... .....
1. 관계공무원중 9인이내	1. ....6인...	1. ....5인...
2. 제3조에서 정한 자중 10인 이내	2. .... 9인.....	2.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64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: 1997. 2.

제안자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

공직풍토를 조성하고,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당해년도에 결근·휴직·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음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연가1일 가산(안 제18조제3항)